등록번호 (등록일자)

미주보상2025



인수보상 위임전결규정 제12-5-②-ㄹ호 팀장 전결

팀 징

- | 20%

기인	! 팀	국외보상부 미주보상팀	합 의	감 사	
기인	나 자	차장 김민과 원자	Н		
기안	일자	2025. 6	-) -		
시행역	시행일자 2025. 6		참 조		-
수	신	각안 참조	발 신	공개구분	일상감사
참	조	식반 삼소			제 호
제	목	각안 참조		,	*

(제 1 안)

수 신: 내부결재

제 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 전액 면책 심사서

- 1. 엔트로상사(주) 대 콜롬비아 Global Latices S A S 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손실액: U\$90,627.50)과 관련됩니다.
- 2. 상기전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한 결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약관 제7조(면책)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수출에 해당하는 U\$90,627.50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붙 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전액 면책 심사서 1부. 끝.

※ 전자기안 예외사유 (문서사무규정 제8조제1항)									
제1호(비밀유지) []	제2호(타법의거) []	제3호(보안유지)[〇]					
(비밀보호만료일 :)	(근거법령 :)	(열람제한만료일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면책 심사서

1. 보상판정 개요

(단위: U\$)

수출금액	결제금 액	손실액	면책금액	부보율	지급보험금
(A)	(B)	(C=A-B)	(D)	(E)	[(C-D)*E]
120,837.00	30,209.50	90,627.50	90,627.50	100%	_

2. 수출계약 및 보험계약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수 출자	엔트로상사(주)	B급('25.4.16, 중소기업)
수 입 자	Global Latices S A S (콜롬비아)	G급('24.9.13, 2년연속 적자) → R급('25.3.4)
수출상품	초산비닐	_
결제조건	T/T 90 days after B/L date	· · · _ · · · · · · · · · · · · · · · ·
보험종목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개별보험
인수한도	U\$30만→ 50만	'22.10.17자 책정 '23. 4.14자 증액

3. 사고건 수출이행내역

(단위: U\$)

선적일	선적일 만기일		결제금액	손실액
'23.4.8	'23.7.6	120,837.00	30,209.50	90,627.50

4. 사고발생통지 및 보험금 청구일

사고발생 통지일 (통지기한)	'25.03.04 ('23.9.5*)	보험금 청구일	'25.5.23	지급시한	'25.7.23

^{* 「}코로니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에 의거, 최초 사고건 만기일로부터 2개월

5. 사고조사내용 (붙임3. 사고발생통지서 및 붙임4. 사고조사보고서 참조)

☐ 수출입자간 거래 및 사고경위

- (수입자개요) 수입자는 업력 15년, 종업원수 76명의 화학물질 제조업체로, '23년 매출액 U\$19백만 규모의 공사신용등급 G급('24.9월, 2년 연속 적자) 업체임
- (거래 및 사고경위) 수출자에 의하면 수입자와는 5년간 거래하였음. 연간 10건약 70만불 규모로 거래해왔으나, 수입자가 자금사정 악화를 호소하며 1년에 걸쳐일부 금액을 입금해오던 중, 연락이 두절되어 공사 앞 사고발생을 통지함

__ 사고조사내용

- (미결제사유) 파나마지사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입자 대표자는 본건 미결제사유가 최근 발생한 여러 악재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라고함
- (채무인정여부) 수입자 대표자는 5월중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며, 이에 5월 중순까지 사고금액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스케줄을 제출하며 채무 전액을 인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미결제중임
- **(수출물품 현황 및 클레임 등)** 본건 채무전액을 인정한 바, 물품 전량 인수 및 클레임은 없는 것으로 보임

6. 심사사항 및 심사의견

가. 심사사항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약관 세부심시사항	적견	여부		
다가 기 골 보라(근 기 수 글 근 기 글 증) 기관 제 가입시하였다.	적격	부적격	비고	
①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제16조)	V		× /	
② 보험부보 적격대상 여부 (제2조)	V			
③ 보험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여부				
- 고지의무 위반 (제9조)	V			
- 내용변경 (제18조)	-	 		
- 보험료 연체 등 (제19조)				
④ 면책조항 해당 여부			=	
- 본지사간 신용위험 (제7조 제1항 제1호)	~			
- 연속수출 (제7조 제1항 제2호)		<i>\sigma</i>	시시이거차조	
- 물품의 멸실, 훼손 등 (제7조 제1항 제3호)	~			
-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채권 (제7조 제1항 제4호)				

다기스초단회/너지호 이번스초 도) 아기 개보시기기회	. 적결	여부	ul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 등) 약관 세부심사사항	적격	부적격	비고	
④ 면책조항 해당 여부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 (제7조 제2항 제1호)	V			
- 손실방지 경감의무 위반 (제10조)	V			
- 다른 보험계약 및 금융계약 등의 통지의무 위반 (제11조)	V			
— 조사 및 지시에 따 를 의무 위반 (제12조, 제13조)	V			
- 사고발생 통지지연 (제21조)	· ·		증가손실無	
⑤ 변제충당 여부 (제31조)		V	심사의견참조	
⑥ 보험계약자의 수출채권 훼손 여부(제5조)	V	=		
① 공사 보유채권과의 상계 필요 여부 (국외보상요령 제14조)	~	:		

나. 심사의견

- (변제충당 검토)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 검토 결과, 수출자는 수입자의 결제대금을 지정하여 충당하였으나, 약관 제31조(변제충당) 및 국외보상 요령 제17조(연속수출거래시 변제충당조항 적용)에 의거, 사고발생건의 만기일('23.7.6) 이후 결제금에 대하여 만기일순으로 변제충당
 - 상기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2건(11, 12번/총 U\$90,627.50)이 미결제 상태가 되어 보상심사 대상이 됨

【 만기일순 변제충당 후 미결제현황 】

(단위: U\$)

순번	선적일	만기일	결제일	수출금액	결제금액	채권잔액	비고
4	'23.2.28	'23.6.27	'23.10.12	86,845.50	86,845.50	_	
5	'23.4.4	'23.7.2	'23.11.3	123,140.10	123,140.10	-	
6	'23.3.7	'23.7.4	'23.11.3	57,969.00	57,969.00	_	
7	'23.4.8	'23.7.6	'24.5.2	120,837.00	120,837.00		결제완료
8	'23.5.26	'23.8.23	'24.5.10	134,757.00	134,757.00	_	
9	'23.7.7	'23.10.4	'24.5.10	46,396.80	46,396.80	_	
10	'23.7.14	'23.10.11	'24.12.23	46,386.00	46,386.00	_	ē
11	'23.12.16	'24.3.14		70,,108.80	26,144.20	43,964.60	미경제
12	'23.12.25	'24.3.23	_	46,66.90		46,662.90	미결제
		합 계		691,107.1	642,475.6	90,627.50	

* 순번 : 붙임 연속수출 검토내역 자료의 순번과 동일

○ (연속수출 검토) 상기 변제충당 결과, 미결제상태인 2건(11,12번)은 원인건 (10번)이 만기로부터 60일 이상 미결제된 상태에서 수출하였는 바,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수출에 따른 면책대상에 해당

【 변제충당 적용 후 연속수출 검토 】

(단위: U\$)

순번	선적일	만기일	만기+60일	결제일	수출금액	결제금액	채권잔액	비고
10.	'23.7.14	'23.10.11	'23.12.11	'24.12.23	46,386.00	46,386.00	_	원인건

원인건(10번)에 따라, `23.12.12~`24.12.22 중 수출한 건(11,12번)은 연속수출 면책

11	'23.12.16	'24.3.14	_	70,108.80	26,144.20	43,964.60	연속수출
12	'23.12.25	·'24.3.23	_	46,66.90	- <u>-</u>	46,662.90	·
		합 계				90,627.50	

- * 순번 : 붙임 연속수출 검토내역 자료의 순번과 동일
 - **(수출자 소명자료)** 상기 면책 예정사항에 대해 수출자는 별도의 소명자료 없음을 공사 앞 회신해옴('25.6.19자 수출자 이메일 참조)
 - **(종합의견)** 상기와 같이 검토한 결과, 약관 제 31조(변제충당) 및 제7조(면책)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수출에 해당하는 U\$90,627.50을 면책하고자 함

(제 2 안)

수 신 : 엔트로상사(주) 대표이사

제 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사고건 보험금 지급 거절 예정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건은 귀사 대 콜롬비아 수입자 Global Latices S A S 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사고건(손실액 : U\$90,627.50)과 관련됩니다.

3. 사고발생통지시 제출하신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검토한 결과, 수출입자간 지정충당한 4~12번 수출건은 ^①사고발생이후 결제된 금액인 바, 약관 제31조(변제충당)에 의거, 결제기일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며, ^②연속수출 원인건 (10번)이 만기로부터 60일이상 미결제중인 상태에서 수출하였는 바, 약관 제7조(면책)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수출에 해당되는 U\$90,627.50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 연속수출 및 변제충당 검토내역 】

(단위: U\$)

A I	LITIO		E121,0001	거피이	人太つ OU	채권	잔액	비고
순번	순번 선적일	만기일	만기+60일	결제일	수출금액	변제충당전	변제충당후	
4	'23.2.28	'23.6.27	'23.8.27	'23.10.12	86,845.50	_	_	
5	'23.4.4	'23.7.2	'23.9.3	'23.11.3	123,140.10	_	_	8
6	'23.3.7	'23.7.4	'23.9.1	'23.11.33	57,969.00	_	_	
7	'23.4.8	'23.7.6	'23.9.5	'24.5.2	120,837.00	90,627.50	_	
8	'23.5.26	'23.8.23	'23.10.23	'24.5.10	134,757.00	_	_	
9	'23.7.7	'23.10.4	'23.12.4	'24.5.10	46,396.80	_	-	
10	'23.7.14	'23.10.11	'23.12.11	'24.12.23	46,386.00	_	_	원인건

선적건(4~12번)은 사고발생이후 결제된 금액인 바, 사고건에 우선 변제충당대상이며, 원인건(10번)에 따라. `23.12.12~`24.12.22 중 수출한 건(11,12번)은 연속수출 면책대상임

12	'23.12.25	'24.3.23	 46,66.90	_	46,662.90	면책
		합 계		90,627.50	90,627.50	

* 순번 : 무신용장방식거래내역에 따라, 결제기일 도래순으로 정렬한 순번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

제7조 (면책) ①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수출거래를 포함함), 보험사고발생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중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수출계약내용에 따른 수출대금의 최초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

제31조 (변제충당) ①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 사이에 수개의 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수출계약상대방 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충당의 지정이 있더라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결제기일(연장된 결제기일이 아닌 최초의 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래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제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비율로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4. 본 건에 대한 공사의 처분 예정사항과 관련하여 소명할 자료가 있을 경우, '25. 6.19일 까지 공사 앞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엔트로상사] Global Latices 소명 포기 및 채권추심대행 요청 건

보낸사람

"오유정"<joy@entro-co.com>

2025-06-19 15:05 (GMT +0900)

받는사람 참조

"김민지1" <kmj00789@ksure.or.kr>

"김도형" <kimi@entro-co.com>, "한지연" <han@entro-co.com>, "무역보험" <insurance@entro

-co.com>

수신: 무역보험공사 김민지 차장님

안녕하세요 차장님

콜롬비아 Global Latices 사고 건 관련하여 소명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대행을 요청드리오니, 관련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유정드림

Joy Oh (Oh You_Jung) / Staff

Entro Corporation

Room 403, Hanwha Bizmetro 1-cha, 551-17,

Yangcheon-ro. Gangseo-Gu, Seoul, Korea 07532

Tel: 82 2 2013 8792 Fax: 82 2 6957 1849

HP: 82 10 7298 1922

Mail: joy@entro-co.com

(제 3 안)

수 신 : 엔트로상사(주) 대표이사

제 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사고건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건은 귀사 대 콜롬비아 수입자 Global Latices S A S 간 수출거래에서 발생한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사고건(손실액 : U\$90,627.50)과 관련됩니다.

3. 사고발생통지시 제출하신 무신용장방식 거래내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검토한 결과, 수출입자간 지정충당한 4~12번 수출건은 『사고발생이후 결제된 금액인 바, 약관 제31조(변제충당)에 의거, 결제기일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며, 『연속수출 원인건 (10번)이 만기로부터 60일이상 미결제중인 상태에서 수출하였는 바, 약관 제7조(면책) 제1항 제2호에 의거, 연속수출에 해당되는 U\$90,627.50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 연속수출 및 변제충당 검토내역 】

(단위 : U\$)

순번	선적일	만기일	만기+60일	결제일	수출금액	채권진액		
						변제충당전	변제충당후	비고
4	'23.2.28	'23.6.27	'23.8.27	'23.10.12	86,845.50	-	_	
5	'23.4.4	'23.7.2	'23.9.3	'23.11.3	123,140.10	_	·	
6	'23.3.7	'23.7.4	'23.9.1	'23.11.3	57,969.00	-		
7	'23.4.8	'23.7.6	'23.9.5	'24.5.2	120,837.00	90,627.50		
8	'23.5.26	'23.8.23	'23.10.23	'24.5.10	134,757.00	- I	-	
9	'23.7.7	'23.10.4	'23.12.4	'24.5.10	46,396.80	-	I	
10	'23.7.14	'23.10.11	'23.12.11	'24.12.23	46,386.00	, <u>-</u>		원인건

선적건(4~12번)은 사고발생이후 결제된 금액인 바, 사고건에 우선 변제충당대상이며, 원인건(10번)에 따라, `23.12.12~`24.12.22 중 수출한 건(11,12번)은 연속수출 면책대상임

합계						90,627.50	90,627.50	
12	'23.12.25	'24.3.23		_	46,66.90		46,662.90	번색
11	'23.12.16	'24.3.14		1 —	70,108.80	_	43,964.60	면책

* 순번 : 무신용장방식거래내역에 따라, 결제기일 도래순으로 정렬한 순번임

【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약관 】

제7조 (면책) ①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수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이 보험에 들지 않은수출거래를 포함함), 보험사고발생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중 만기가 도래한거래의 수출대금이 결제기일(수출계약내용에 따른 수출대금의 최초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에 대하여 발생한손실

제31조 (변제충당) ① 보험계약자와 수출계약상대방 사이에 수개의 채무가 경합하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면 수출계약상대방 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충당의 지정이 있더라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결제기일(연장된 결제기일이 아닌 최초의 결제기일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래 순으로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결제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비율로 충당된 것으로 봅니다.

4. 본 건의 면책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 제35조(이의신청)에 따라, 면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